

의안번호	2215430
의 퇴 인	최민희의원
회 답 일	2026. 1. 26.
추계번호	25B7195
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2(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) 신설	정부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의2(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) 신설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, 지정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되는 학교의 수, 지정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되는 학교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며,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이공계 특성화 대학 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지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, 동 개정안에서도 해당 대학의 지정 요건,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인 이공계 특성화 대학 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
 - 참고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현재 4개의 과학기술원(한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,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울산과학기술원)이 운영 중에 있으며, 국가는 각 과학기술원의 설립 근거 법률 등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원의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

[표 1] 과학기술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현황

학교명	설립년도	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 (2025년 기준)	설립 및 지원 근거 법률
한국과학기술원	1971	281,896백만원	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
광주과학기술원	1993	118,530백만원	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
대구경북과학기술원	2004	115,597백만원	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
울산과학기술원	2007	108,144백만원	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